

규제영향분석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목 차>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자	이름	배수린
	담당부서 (과)	전자거래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송상민		연락처	044-200-4466
	과장	박성우		이메일	kftc_i422@mail.go.kr

정책책임자 직위: 소비자정책국장

성명: 송상민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 규제사무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2. 규제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3. 위임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4. 유형	강화	5. 입법예고	'19.12.26.~'19.1.16.
규제의 필요성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와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안전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과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품정보 제공할 의무 부여		
	7. 규제내용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상품의 확률정보, 도서지역의 추가배송비, 생활화학제품의 화학물질명, 자동차첨가제의 검사번호,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내용량 등의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자 : 통신판매업자 ○ 이해관계자 : 일반국민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가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와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의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의
		피규제자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기타	11.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X	X	O
기타	12. 일몰설정 여부	X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X		
	14. 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의
			0	0
			연간균등준비용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p>1.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가.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나.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u><신설></u> <u><신설></u></p>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p>1.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가.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나.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다. 배송비용(도서 지역 추가비용 포함) 라.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재화 등이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어 소비자가 어떤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을지를 계약체결 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른다.</p>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p>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1.~ 9. (생략) <u><신설></u></p>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p>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1. ~ 9. (현행과 같음) 10. <u>검사합격증 번호(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첨가제·촉매제에 한함)</u></p>
<u>10. A/S책임자와 전화번호</u>	<u>11. A/S책임자와 전화번호</u>

현 행	개 정 안
(17) 주방용품 1.~ 7. (생략) 8. <u>식품위생법</u> 에 따른 수입 기구·용기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필함”의 문구 9.~10.(생략)	(17) 주방용품 1.~ 7. (현행과 같음) 8. 「 <u>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u> 」에 따른 수입 기구·용기의 경우 “「 <u>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u>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9.~10.(현행과 같은)
(18) 화장품 1.~ 4. (생략) 5. <u>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u> 6. ~ 11. (생략)	(18) 화장품 1.~ 4. (현행과 같음) 5. <u>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u> 6. ~ 11. (현행과 같음)
<u>(20) 식품(농수산물)</u> <u><신설></u> 1. <u>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u> 2. ~ 3. (생략) 4. <u>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u> 5. (생략) 5-1. (생략) 5-2. <u>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u>	<u>(20) 식품(농수축산물)</u> 1. <u>품목 또는 명칭</u> 2. <u>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u> 3.~ 4. (현행 2. 3.과 같음) 5. <u>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u> 6. (현행 5.와 같음) 6.1. (현행 5-1.과 같음) 6-2. <u>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u>축산물이력법</u>」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u>

현 행	개 정 안
5-3. (생략)	<u>6-3. (현행 5-3과 같음)</u>
5-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6-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u>6.~ 7. (생략)</u>	<u>7. ~ 8. (현행 6. ~ 7.와 같음)</u>
<신설>	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8. (생략)	<u>10. (현행 8과 같음)</u>
(21) 가공식품	(21) 가공식품
1. <u>식품위생법</u> 에 따른 표시사항	1. 「 <u>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표시사항
<신설>	1-1. <u>제품명</u>
1-1.~1-2. (생략)	1-2.~1-3. (현행 1-1.~1-2.와 같음)
1-3. 제조연월,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1-4. 제조연월, 유통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1-5. (생략)	1-6. (현행 1-5.와 같음)
1-6. 영양성분(<u>식품위생법</u> 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7. 영양성분(「 <u>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7. (생략)	1-8. (현행 1-7.와 같음)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삭제>
<신설>	1-9.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현 행	개 정 안
1-9.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u>식품위생법</u>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생략)	1-10.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u>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u>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현행과 같음)
(22) 건강기능식품	(22) 건강기능식품
1.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표시사항 <u><신설></u> 1.1~1.3. (생략)	1. 「 <u>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표시사항 1-1. <u>제품명</u> 1-2.~1.4. (현행 1-1.~1-3.과 같음)
1-4. <u>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u>	1-5. <u>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u>
1-5.~1.10. (생략)	1-6.~ 1.11. (현행 1-5.~1.10.과 같음)
1-11.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u><삭 제></u>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u>식품위생법</u>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u><신설></u> 2. (생략)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u>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u>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1-13. <u>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u>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7) <u>생활화학제품</u>
	* 「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한함
	1. 「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표시사항 1-1. <u>품목 및 제품명</u> 1-2. <u>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u>

현 행	개 정 안
	<u>께 표시) 및 제형</u>
	<u>1-3.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u>
	<u>1-4. 중량 · 용량 · 매수</u>
	<u>1-5. 효과 · 효능 (승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에 한함)</u>
	<u>1-6.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 국 및 제조사</u>
	<u>1-7.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제품 유무</u>
	<u>1-8.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u>
	<u>1-9. 사용상 주의사항</u>
	<u>1-10.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자가검사번호) 또는 승인번호</u>
	<u>2.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u>
	<u>(38) 살생물제품</u>
<신설>	<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대상 제품에 한함</p> <p><u>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u></p> <p><u>1-1. 제품명 및 제품유형</u></p> <p><u>1-2. 중량 또는 용량 및 표준사용량</u></p> <p><u>1-3. 효과 · 효능</u></p> <p><u>1-4.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u></p> <p><u>1-5.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u></p> <p><u>1-6.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제품 유무</u></p> <p><u>1-7.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유해화학물질(또 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u></p> <p><u>1-8. 제품 유해성 · 위험성 표시</u></p> <p><u>1-9.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u></p>

현 행	개 정 안
	<u>1-10. 승인번호</u>
	<u>2. 소비자상담 전화번호</u>
(37) 기타용역 1.~ 6. (생략)	<u>(39) 기타용역</u> 1.~ 6. (현행과 같음)
(38) 기타재화 1.~ 5. (생략)	<u>(40) 기타재화</u> 1.~ 5.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개 요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제공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하고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 전자상거래 등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12년 제정하여 3차례 ('13년, '15년, '16년) 개정을 거쳐 시행 중
- 최근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와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안전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과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시 개정을 추진

*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재화 등이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어 계약체결 전에 어떤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을지 알 수 없는 상품(예 : 시계 랜덤박스, 확률형 게임아이템)

【 정부 개입필요성 】

□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 (배경)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조치사례) (주)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주), (주)넥스트플로어의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조치 부과(2018. 4.)

- (개정안)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

* (예시)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B,C,D)의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 시,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방식으로 표시

□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표시

- (배경)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
- (개정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제공하도록 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 (배경) 최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해 상품정보 표시를 의무화 필요
 - * (생활화학제품)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살생물제품)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도록 함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2019.1.1.)

□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표시사항

- (제품명 신설)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품목 또는 명칭’ 및 ‘제품명’을 표시하도록 항목 신설
- (내용량 표시)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
 - * (현행)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 (개정)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기타) 품질기한 삭제, 축산물이력관리 대상 확대, 표시·광고 사전 심의 폐지 등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자동차 첨가제·촉진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 (개정안)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 합격증 번호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상품정보 제공 고시 현행 유지
	내용	확률형 상품의 확률정보, 배송비용,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상품정보 미제공
규제대안1	대안명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
	내용	확률형 상품의 확률정보, 배송비용,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규제대안2	대안명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보제공 유도
	내용	소비자단체 운동 및 사업자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확률형 상품의 확률정보, 배송비용,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담완화	안전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 정보 미제공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규제대안1	안전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 정보 제공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담증대
규제대안2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미제공에 따른 제재가 없으므로 사업자의 부담완화	사업자의 선의에만 의존하므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통신판매업자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예정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예정	
일반국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예정	
게임산업협회 및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 공개는 이미 자율규제로 시행중이므로 신중검토 필요	- 자율규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고시 개정을 통한 법적으로 강제력 부여 필요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및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 - 소비자가 제품명 및 상품용량을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시하게 할 필요	-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추가 및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항목 변경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련 신고 또는 승인번호,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 등 필수정보 표시 의무화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수정보 표시를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의무화할 필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상품정보 추가
	- 대기환경보전법은 첨가제·촉매제의 제조·수입업자에 사전검사 의무 부여 - 환경부가 수시점검 중이나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기하게 할 필요	- 자동차용품 (첨가제·촉매제에 한함) 검사합격증 번호 항목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소비자원	- 제주도민들이 과도한 추가 택배비용 부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 해외,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으로 배송비용 관련 사전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지속적 분쟁 제기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동으로 특수 배송비 실태조사 및 도의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등 공론화 - 사업자가 배송비용이나 배송비용 산출방법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할 필요성	- 배송비용 (도서지역 추가비용 포함) 정보 추가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상품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3. 규제목표

- 소비자의 안전과 구매결정과 관련한 상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하고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X	X	O	X	X	X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기술수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고시개정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 추가적인 경쟁제한 사항을 유발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가 해당 없는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고,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는 삭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기재)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판매/영업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해당 규제 대상집단은 온라인 등 통신판매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임. 현재 온라인 등에서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으므로, 기업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한 표본모델이나 예비분석표 모델을 통한 분석이 사실상 곤란
④ 대상 업종	업종이 특정되지 않음
⑤ 예비분석내용	2016년 8월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자 445만명 중 개인사업자는 약78%(348.5만명), 법인사업자는 약22%(96.5만명)로 통신판매업자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에 해당 *출처 : '온라인 사업자의 성장과 글로벌화'(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7.5.10.) 따라서, 해당규제를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면제한다면 소비자 피해예방 등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곤란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정보사항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되, 규정되지 않은 정보사항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확률형 상품 중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와 관련 해외 사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 게임산업협회(ESA)와 확률형 아이템의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개 워크숍 진행 후 2020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입장 발표
중국	‘온라인 게임 운영 규제 및 사후 감독 강화에 관한 고시’에서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임의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가상의 재화 및 부가가치 서비스의 이름과 성능, 내용, 수량 및 아이템별 확률을 공지해야한다”고 규정
일본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해 2016년 4월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 법’을 개정하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컴플리트 가챠’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
유럽	일부 유럽 국가(벨기에 및 네델란드) 도박 위원회에서 일부 게임에서 판매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판매 금지 조치

- 품목별 상품정보 공개 관련 해외 사례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또는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항목보다 간략하게 매우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보제공 항목으로 규정
EU 소비자권리지침	우리나라처럼 품목별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정보제공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풍부하고 많은 정보제공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

○ 타법사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련 상품정보의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준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준비용		연간균등준비용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같은 수준의 자율규제 실시하고 있거나, 상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사항을 상품에 직접 표시하고 있으므로 준수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같은 수준의 자율규제 실시하고 있거나, 상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사항을 상품에 직접 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집행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9.3.17. :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 정보 비대칭성이 큰 품목에 대한 확률정보 적시 등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를 위해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
- '19.4.30.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관련업종 협·단체에 고시 개정수요 파악
- '19.6.29.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이해관계자 협의
- '19.7.15.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항 협의
- '19.7.25. 문체부 확률형 게임아이템 관련 협의
- '19.8.27.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협의
- '19.8.19. 고시 개정 초안 내부결재
- '19.8.19. 고시 개정초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공문 발송
- '19.9.18. 문체부 확률형 게임아이템 관련 협의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 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 마련

3. 종합결론

-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와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안전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과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기대됨

별 첨**비용편의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의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통신판매업자
활동제목	규정 숙지 비용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고시 시행 초기 통신판매업자의 규정숙지 비용 발생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시행 초기 통신판매업자가 고시에서 제시한 법위반 유형 및 예시를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이나 이를 수치화하기 곤란함 ○ 오프라인 판매시 타법상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품정보에 대해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표시하게 하는 것이므로, 관련 검사나 인증, 승인 등을 받기 위한 비용 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음

간접편의

(정성)세분류	통신판매업자
활동제목	양질의 제품 거래로 신뢰성이 확보되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의 편의 발생
편의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상 요구되는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는 양질의 제품이 거래되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 소비자들이 사전 정보 습득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 구매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면, 관련 수요 및 매출의 증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음

② 정부 :

비용

(정성)세분류	규제기관
---------	------

활동제목	안내 및 감독 비용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강화되는 규제의 내용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안내하고 위반시 감독하는 행정비용 발생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되는 규제의 내용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들은 인지하지 못해 기존대로 상품정보를 표시하여 법위반 상황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안내와 감독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편익

(정성)세분류	규제기관
활동제목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되면 규제 관련 행정비용이 절감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 관련 분쟁이 감소하고, 양질의 제품 유통으로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면, 궁극적으로 정부의 규제 관련 행정비용이 절감됨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분쟁비용 감소, 건강 보호 및 안전성 향상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관련 분쟁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성이 향상되는 편익 발생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소송비용 등 분쟁 관련 유무형의 비용 감소에 기여 ○ 관련법상 요구되는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는 양질의 제품이 유통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성이 증진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편익 발생